탄 원 서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공사 관련 형사사건

사건번호 _____

담당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4 부

피고인 황승호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실 행정관)

탄원 취지 다투는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선고 및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신중하고 비례적인 판단 요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4 부 귀중

탄원의 취지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저는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공사 사건의 재판 보도를 접한 시민으로서 황승호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올립니다. 국가계약의 적법한 집행과 감사원의 독립적 감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피고인의 실무자 지위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 달라거나, 불리한 법정 증거를 외면해 달라는 취지로 탄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역할로 관여한 사건에서는 상급자의 결정, 실무자의 개별 지시와 연락, 각각의 인식 및 결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절차상 잘못을 인정한 사정이 모든 범죄의 고의와 공모를 인정하는 것인지도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황승호 피고인에게 실제로 증명된 책임만을 부담시키되, 구성요건의 증명이 부족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1. 피고인의 실제 역할과 독자적 판단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주십시오

특별검사팀은 황승호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서 21 그램의 관저 공사 수행과 건설업체 명의 사용, 계약 및 준공검사 관련 문서 처리, 추가 공사계약을 통한 사기와 감사원 감사 방해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각각의 혐의는 모두 중요하지만 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감사원법 위반은 성립요건과 증거의 대상이 다릅니다. 한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여 각 죄의 요건을 일괄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누구의 지시를 언제 전달받았는지, 스스로 변경하거나 결정한 업무가 무엇인지, 외부 업체와 정부 담당자에게 어떠한 요구를 전달하였는지, 그 지시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무상 보안과 상급자의 지시는 행위를 당연히 정당화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일 수 있습니다.

실무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부정하지도, 실무 연락을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전체의 위법을 피고인의 고의로 추정하지도 않는 균형 있는 판단을 간청합니다.

2. 명의대여와 직권남용은 권한·상대방 행위·인식의 관계를 밝혀 주십시오

특검은 면허가 없는 것으로 지목된 21 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도록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사용하게 하고 관련 교섭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느 업체와 연락했는지, 명의 사용의 실제 구조와 등록·면허의 문제를 언제 인식했는지, 명의대여에 관여했다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법 제 123 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위법·부당한 행사와 더불어 상대방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 및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2 년 1 월 27 일 선고 2010 도 11884 판결과 2020 년 1 월 30 일 선고 2018 도 223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실무 담당자라도 고유의 법정 절차를 위반하도록 한 행위가 있으면 직권남용의 결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협의와 부당한 직권행사를 모두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구체적인 요구의 내용과 효과를 구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공무원이나 관련 업체에 실제로 어떤 부당한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협의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미리 받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각각에 필요한 인식과 실행을 정확하게 구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3. 약 16 억 원 사기 혐의는 계약마다 기망행위와 공모의 범위를 판단해 주십시오

특검은 공사비 초과 지출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숨긴 채 다른 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로부터 약 16 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 예산을 둘러싼 중대한 혐의이므로, 피고인의 실무상 연락 행위와 재산상 편취를 위한 고의적인 기망·공모를 구별하여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계약의 실제 목적과 공사 내역, 관련 산출·정산서, 피고인의 검토·결재 및 연락 시점, 계약 담당자가 믿었던 사실과 실제 사실의 차이, 그 착오가 대금 지급에 영향을 미쳤는지,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는지를 계약별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피고인의 계획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황승호 피고인이 그 전체 계획을 공유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허위 목적을 알고 계약을 적극 조율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회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기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과 지급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기망 및 공모의 증거를 중시해 주십시오.

4. 준공검사·직무유기·허위공문서의 책임을 문서와 행위별로 판단해 주십시오

준공검사를 실제로 실시하지 않았으면서 실시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는 공소사실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문서마다 작성 주체, 내용의 진실 여부, 결재와 행사 경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황승호 피고인이 작성·보고·결재·전달 과정에서 무엇을 알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의 요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무유기죄 또한 부실한 업무 처리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2 년 6 월 30 일 선고 2021 도 8361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제로 어떤 법령상·직무분장상 의무가 있었고 그 이행 가능성이 있었는지,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으로 의식적으로 포기했는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서의 허위를 알고 작성·행사했거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무자의 보고·보조·연락 업무와 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구분해, 실제 관여가 확인된 범위만큼 판단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5.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의 녹취·증언과 감사원법상 요건을 면밀히 판단해 주십시오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는 특히 엄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 년 3 월 30 일 공판 보도에 따르면, 21 그램 측에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준 업체 대표는 황승호 피고인으로부터 감사원 답변 문구를 구체적으로 전달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통화 녹취에는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했으며 공사 관련 자료는 경호처에서 폐기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증인은 실제로 경호처가 자료를 폐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중요 증거이므로, 저는 이를 없었던 일로 보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허위 내용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그에 따라 감사가 방해되었다면, 이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반면 통화 녹취의 일부 발언과 제삼자의 증언만을 별도의 검토 없이 모든 감사 방해 행위의 고의·가담 범위로 확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녹취 전체의 문맥과 발언 당시 피고인의 인식, 실제 자료의 보관·폐기 경위, 답변서가 작성·제출된 방식, 감사원 요구의 범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신중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원법 제 27 조는 감사에 필요한 관계자 출석·답변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제 50 조는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51 조 제 1 항은 법률이 정한 감사 거부·방해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 등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장에서 피고인에게 제 51 조의 어떤 행위유형이 어떤 기초 사실로 적용되었는지는 공개 기사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감사 요구가 어떤 법적 근거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피고인이 어떤 지위에서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그 행위가 기소된 법률상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여 심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정에서 제시된 녹취의 존재와 증인의 진술은 가볍게 취급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해당 증거의 신빙성, 객관적인 문서와의 부합 여부, 피고인 개인의 행위 및 고의에 관한 심리 결과를 종합하여 정해져야 합니다. 불리한 정황도 빠짐없이 평가하시되, 그 증거가 입증하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책임을 넓히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절차상 잘못을 돌아보는 태도와 혐의별 인정 범위를 구분해 주십시오

2026 년 10 월 26 일 결심공판 보도에 따르면 황승호 피고인은 국가를 속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절차상 부족했던 부분은 반성한다는 취지로 최후진술하였습니다. 이 진술이 곧바로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절차상 부족함에 대한 반성이 사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감사 방해 등 모든 범죄의 구성요건을 일괄적으로 인정한 것과 같다고 단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최종변론에서 어느 개별 혐의와 사실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는지, 어느 부분을 여전히 다투는지는 변호인 의견과 공판조서에 따라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개된 기사만으로 그 인정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탄원서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도, 모두 인정한다고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존중하면서도, 별개의 혐의에 관하여 필요한 고의·행위·결과가 증명되었는지는 독립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고인에게 개인적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는지도 자료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익의 취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나 직권남용 등 모든 범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무죄의 유일한 근거로 삼지 않겠습니다. 실제 관여 정도와 인정되는 잘못, 그에 수반된 법률상 책임을 각각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무죄추정과 혐의별 증명 원칙에 따라 최종 판단해 주십시오

2026 년 10 월 26 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같은 해 11 월 20 일 선고가 예정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공소장 전문과 공판조서·증거목록 전체를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의 인품과 공적이나 가족 사정을 만들어 넣기보다, 이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을 가려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 307 조 제 2 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고, 같은 법 제 325 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황승호 피고인의 개별 지시와 연락, 위법한 명의 사용에 대한 인식, 계약 관련 기망과 공모, 준공검사·문서작성의 고의, 감사원 감사 방해의 행위유형과 인식이 각각 어디까지 증명되는지를 구별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은 공소사실이 있다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실무상 역할과 실제 재량·결정권, 확인된 피해 및 결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범위 등 합법적인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비례에 맞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맺음말

존경하는 재판부께. 국가계약과 감사제도의 신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그 책임 역시 피고인마다 실제로 증명된 행위의 범위 안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황승호 피고인에게 어떤 특혜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남의 책임을 함께 떠안거나 입증되지 않은 고의까지 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혐의별로 면밀히 판단하시어 증명이 부족한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